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4. 19 선고 2022가단603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임드보라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승

담당변호사 김민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동석

변 론 종 결 2023. 2. 15.

판 결 선 고 2023. 4. 19.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0. 3. 18.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11. C에게 10,000,000원을 상환기일 2009. 7. 10., 대출이자율 3개월CD금리 + 연 7.63%, 지연배상금을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비율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소외 은행은 2014. 5. 29.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014. 6. 3. C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89962호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7. 1. 위 법원으로부터 11,406,999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2015. 6. 24.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한편 C의 부친 E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다가 2020. 2. 2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상속분 3/11)와 자녀들인 F, C, G, H(상속분 2/11)이 있는데, 피고를 비롯한 위 상속인들은 2020. 3. 18.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20. 3. 18. 접수 제784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11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 외에도 주식회사 I에 대한

404,561,000원의 채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62,278,000원의 채무, 대한민국(광주지방법원, 국세청)에 대한 239,230,000원의 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장, 사단법인 J장,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인정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무를 포함하여 10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2/11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로서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그와 같은 행위의 결과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피고가 C에게 여러 차례 돈을 대여하였는데 이에 대한 변제로 C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양도받았을 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재산상태 및 C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판결 등 참조), 수익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증거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 제출한 각 예금거래내역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C에게 13,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존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2020. 3. 18.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 2) 한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인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피고를 상대로 채무자인 C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이 상속받은 각 2/1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K조합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피담보채무액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인 1997. 5. 8. 설정되어 현재까지 말소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이 상속받은 각 2/11 지분은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던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남아 있는 이상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금선

별지